

#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학회지 (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) 편집위원회 규정

## 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(이하 '학회'라 함)의 학회지 “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”(이하 '학회지'라 함)를 편집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(이하 '위원장'이라 함) 1인, 편집부위원장(이하 '부위원장'이라 함) 1인 및 15인 내외의 편집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함)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 1명이 담당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되, 각 연구회의 연구회장 또는 간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학회 이사 중에서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학회 이사회 혹은 연구회장 재임기간과 동일하며 연임될 수 있다.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교체, 보완할 수 있다.

## 제 3 조 (발행)

학회지는 년 6회 매 짝수 달 마지막 날(2월 28일, 4월 30일, 6월 30일, 8월 31일, 10월 31일, 12월 31일)에 발간한다.

## 제 4 조 (위원장, 부위원장)

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5 조 (임무)

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며, 발간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.

#### 제 6 조 (회의)

위원회 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.

#### 제 7 조 (사업보고)

위원회는 사업내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 8 조 (의결사항)

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.

#### 제 9 조 (기타사항)

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

#### - 부 칙 -

1. 본 규정은 2006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4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18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